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2월 13일
복 지 건 설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월 23일, 정재동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년 1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5년 2월 13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체육을 진흥하고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종목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2) 운영비 지원 조항에서 ‘금천구장애인체육회’ 문구를 삭제하고「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 별도 규정함(안 제13조)

3) 보조금을 지원하는 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18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1) 개정 이유

○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금천구 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종목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나) 운영비 지원 조항에서 '금천구장애인체육회' 문구를 삭제하고「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 별도 규정함(안 제13조)

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18조 신설)

-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 등에 지도·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의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체육단체 등에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금천구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